

가톨릭과 생명의료윤리교육

맹 광 호*

1. 머리말

다른 현대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의료윤리교육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관심과 실천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나 착하고(good) 옳은(right)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종교의 일반 윤리 교육적 기능과 맥을 같이 한다. 그것은, 착하고 옳은 일이 생명이나 의료와 관련한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매 한가지이기 때문이다.

단지, 가톨릭 교회의 경우, 생명의료윤리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비교적 완전히 구분되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즉, 초창기 가톨릭의 생명의료윤리교육 전통은 주로 병든 사람에 대한 연민과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물론, 신약성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예수의 많은 환자 치유 기적과, 특히 강도를 만나 다 죽게된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 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루가복음, 10:30-37)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보면, 환자를 애정으로 돌보는 일은 이 일을 맡은 사람들, 예컨대 의료인들의 윤리적 덕목이라기보다 교회 전체가 지켜야 할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옳다.

그것은, 지금도 교회가 병든 사람들에 대해 봉사하는 것을 교회 선교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의료는 항상 인간 구속(救贖) 사명을 실현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일찍부터 환자와 임종자를 돌보기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관여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일 외에, 가톨릭 교회가, 오늘날 주요 의료윤리 문제의 내용이 되고 있는 인간생명 관련 기술과 의료에 대해 교회적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자들에 대한 구체적 윤리교육을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적으로 보면, 물론 이전에도 가령 인공유산이나 인공적 출산 조절 그리고 성 문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제 등에 관한 의사들의 임무를 십계명이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근거해서 규정
한 것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반 생명관련 의료활동들에 대해 자연법과 권위적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양심에 관한 윤리 신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가톨릭 윤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195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

구미 여러 나라에서 가톨릭적 생명의료윤리 관련 책들이나 이에 관한 유명 전문 잡지
들이 발간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이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 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으로 발표된 「현대세계 사목헌장」¹⁾ 은
이후로 급격히 발달한 생명관련 기술이나 사람들의 의료 행태에 대해서 교회가 그 윤리
성 여부에 관한 적절한 가르침을 주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것은,
이 공의회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현대세계의 문제들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서 인류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후 가톨릭 교회는 오
늘날 윤리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의 모든 생명관련 기술이나 의료에 대해 구체적인 윤
리지침을 문헌으로 제시해 왔다.

그리고 이들 문헌은 세계 여러 나라 가톨릭 보건의료인 단체가 제정해서 지키기로 약
속하는 각종 생명의료 윤리선언이나 각종 가톨릭계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들에서 이
루어지는 윤리교육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들 가톨릭 생명의료윤리교육의 바탕이 되는 가톨릭 윤리원리를
간단히 소개하고 생명의료윤리 관련 주요 문헌들과 가톨릭 보건의료 단체들의 윤리선
언 내지 행동지침, 그리고 각종 가톨릭계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들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생명의료윤리교육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관심과 실천 상태
를 설명하고자 한다.

2. 가톨릭 의학윤리 원리

생명의료윤리학 분야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원리는 자율성의 원리, 무해성의
원리, 선행의 원리, 그리고 정의의 원리 등 네 가지다.

이런 일반 의학윤리 원리들과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는 주로 자연법에
기초를 둔 다음 다섯 가지 윤리 원리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즉,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 윤리원칙을 적용하되, 하느

1) 교황청(196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세계 사목헌장 pp.179-279.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번역 출판, 1969.

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인간의 목적을 그 안에서 완성하려는 의도를 포함하는 것이 가톨릭의 윤리원리인 것이다.’²⁾

이들 다섯 가지 가톨릭 생명의료윤리원리의 첫째는, 관리인의 원리(principle of stewardship)이다. 이 원리는, 인간의 생명이 본래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육체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원리다.

인간은 단지 영적 신체적 기능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는 책임을 가진 관리인에 불과하며, 이러한 원리에서 우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할 책임이 막중하며 평소에 우리 몸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체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둘째는 인간생명 신성불가침의 원리(principle of the inviolability of human life)이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고 인간은 단지 자기 생명의 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명은 신성하고 불가침적이라는 견해이다.

이 원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생명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이 ‘생명의 권리’라는 표현은 인간이 자신의 결정으로 생명을 스스로 끝낼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생명은 아무도 빼앗거나 넘겨줄 수 없고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인공유산과 안락사, 그밖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또 자살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결정함으로써 하느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톨릭의 윤리신학에서는 정당방위, 전쟁 중에 적을 살상하는 일, 과실치사 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셋째는 전체성의 원리(principle of totality)이다. 인간의 육체는 하느님의 것이고 단지 개개인에게 임시로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몸을 절단하는 외과수술에는 정당성이 요구된다. 전체성의 원리에 의하면 ‘부분’이라는 것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전체를 위한 균형적인 이익에 이익을 담당한다고 판단될 때라야만 일부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커다란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조직이나 기관을 희생시키는 것이나 생명 전체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병든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정당화해 준다. 이 원리는 몸의 한 부분이 온몸의 생존을 위협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 예로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적으로 인체실험에 참가하는 일이나 자신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장기를 기증하는 일, 그리고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 태아를 희생시키는 일 등에서 볼 수 있다.

2) 김중호(1995). 가톨릭 의학윤리의 원리.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pp.19-22. 바오로. 서울

넷째는 성과 출산의 원리(principle of sexuality and procreation)이다. 인간의 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적 욕구의 만족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가 성에 내포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의 기능처럼 성적 기능도 하느님의 의도와 관계 안에서, 그리고 본래의 목표에 의해 의미가 주어져야 한다. 가톨릭의 윤리신학은 성적 기능의 두 가지 목적을 인정해 왔다. 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첫 번째 목적은 최근까지도 결혼의 주된 목적으로 여겨졌으며, 두 번째 목적은 결혼을 통해 사랑의 일체성(union)과 동반성(companionship)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가톨릭의 윤리신학에서는 생식적 기능과 비생식적 기능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비생식적 기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생식적 기능은 종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능은 개인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불임수술과 피임법의 금기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섯째는 이중효과의 원리(principle of double effects)이다. 이중효과의 원리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부수적으로 나쁜 결과가 발생되더라도 어떤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즉, 첫째는 행위 그 자체가 선해야만 하고 적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둘째는 예측되는 유익한 영향은 예측되는 손상효과보다 크거나 혹은 같아야 하고, 셋째는 행위자의 의도가 유익한 효과를 거두는 것은 돕고 손상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는 손상효과가 유익한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원리는 자궁암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자궁 제거 수술을 한 결과 태아가 죽게 되는 것과,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많은 양의 진통제를 사용함으로써 호흡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낼 때 적용된다.

3. 가톨릭 생명의료윤리 관련 주요 교회문헌들

가톨릭 교회는 오래 전부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사회에 적용하는 다양한 문헌들을 발표해 왔다.

물론, 이런 교회 문헌들은 기본적으로 성서와 그 안에 나타나는 예수그리스도의 모범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교회가 수시로 이런 문헌을 내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성서의 내용을 임의로 해석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교회의 사목적 배려의 의미도 크다.³⁾ 이런 가톨릭 교회의 문헌은 교황의 회칙에서부터 교서, 권고, 서간문, 그리고 교황청 신앙교리성성(信仰敎理聖省)의 훈령이나, 선언문 등 그 중요성에 따

3) O'Rourke KD, Boyle P(1993). Medical Ethics : Sources of Catholic Teaching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어 발표가 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신자들이 성실히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가톨릭 교회가 생명에 관련된 인간의 행위들, 특히 생명의료활동에 대해 그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 가톨릭 교회는 많은 가르침을 내고 있다. 대표적인 문헌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생명회칙(Humanae Vitae, 1968)⁴⁾

일명 「산아조절에 관한 회칙」으로도 불리는 이 회칙은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반포된 유명한 문헌이다.

이 문헌은, 기본적으로 세계 인구문제와 이로 인한 경제문제를 손쉬운 인공적 피임방법 보급에 의한 출산방지만으로 해결하려는 국가들의 인구정책을 우려하며 이런 정부의 인구정책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부부들의 지나친 피임사고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비자연적인 모든 출산조절 방법들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가톨릭 교회의 선언적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인공적 피임방법들이 가져 올 윤리문제로 이 문헌은 생명전달의 의무를 지닌 결혼의 가치와 부부간의 일치가 손상받는다든 것과 무엇보다 이들 인공적 피임방법 모두가 의도적으로 수정을 방해하거나 일단 수정된 난(卵)을 없애는 것으로 반(反)생명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 문헌은 자연주기법에 의한 피임을 권하고 있다.

즉, 이기적이 아닌 이유로 자녀출산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는 여성의 생리 한 주기 중 약 1/3밖에 안 되는 가임기 동안만 부부 성생활을 자제함으로써 임신을 피하는 것을 전체적 인간애와 부부애,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한창 인구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던 때이므로, 이 문헌은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가톨릭 교회 내에서조차 이 문헌 발표에 대해 재고를 청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교황 바오로 6세는 여러 날 잠을 못 이루는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이 문헌을 발표하게 된다.

이 같은 교황 바오로 6세의 고민은, 이 문헌 말미에 덧붙인 각국 정부지도자와 전세계 주교나 사제들, 그리고 의료인들에게 보내는 당부에 잘 반영되고 있다.

4) 교황 바오로 6세(1968). 산아조절에 관한 회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번역 출판, 1968.

즉, 정부지도자들에게는 현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개발과 분배 정의 실현 등으로 극복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부부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상담해 주도록 하고, 전세계 의사들, 특히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톨릭 의사들과 과학자들에게는 보다 효과적인 자연적 가족계획방법 개발과 보급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헌과 관련하여 특기할 일은, 시간이 갈수록 이 문헌의 가치가 교회 안팎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으며, 달력주기법 정도에 머물던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들도 지금은 매우 과학적인 배란 증상 관찰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 방법으로 발전이 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인간생명회칙」의 내용은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특별서한문, 「현대세계의 크리스찬 가정(Familiaris Consortio)」은 물론, 각종 의료인 단체 모임 등에서 행한 교황의 많은 연설문에도 일관되게 반영되어 왔다.

2) 인공유산 반대 선언문(Declaration on Procured Abortion, 1974)⁵⁾

1974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성에 의해 발표된 이 문헌은 제목 그대로 인공유산이 엄연한 생명파괴 행위이며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인공유산은 막아야 한다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선언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인공유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의 무질서와 이를 부추기는 사회현상들, 그리고 부부간의 불화와 무책임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앙과 이성(理性)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이 문헌은 특히 인공유산을 법으로 허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과 윤리의 문제 설명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인공유산을, 인구감소를 위한 출산조절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 부도덕성을 비난하면서 정의롭고 윤리적인 인구정책과 개발 노력을 권고하고 있으며 부부들에게도 인공유산의 유혹을 받게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보다 양심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인간생명을 이 세상 다른 어떤 가치보다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도 그 신앙적 의미를 깨닫고 이를 수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3) 안락사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Euthanasia, 1980)⁶⁾

1980년, 역시 교황청 신앙교리성성에서 발표한 「안락사에 관한 선언문」은 당시 이

5) 교황청 신앙교리성성(1974). 인공유산 반대 선언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번역 출판, 1974.

미 유럽 몇 나라에서 실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안락사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윤리적 견해를 선언문 형식으로 밝힌 문헌이다.

서론에서, 불안한 현실과 장차 더욱 심각해질 안락사 문제를 교회의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인 다음, 이 문헌은 인간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어서 안락사가 지닌 의학적 허구성과 육체적 고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면서 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 대한 올바른 진통제 사용과 정신적, 신앙적 배려를 제안하고 있다.

즉,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달리 도움이 될 만한 기왕의 치료방법이 없을 경우 설사 실험단계에 있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사용해도 좋다는 것과, 온갖 노력에도 죽음을 회피할 수 없다면 불필요한 생명연장 노력으로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을 양심 안에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인'(extra ordinary) 수단을 동원해서 치료하는 일은 거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간호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한편, 이 선언문은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병자와 임종환자들에게 끝없는 친절과 정성어린 사랑의 위안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호스피스 활동을 중요한 안락사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인간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Instruction of Respect for Human Life in Its Origin and on the Dignity of Procreation, 1987)⁷⁾

일명 「생명의 선물」(Donum Vitae)라고도 불리는 이 문헌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성이 1987년에 발표한 문헌으로 '현대세계의 몇 가지 의문에 대한 대답들'이라는 부제(副題)를 가지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최근 각종 인공적 출산관련 생명의료 기술들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윤리서라고 할 수 있다.

크게 3부로 나뉘어진 이 문헌은 우선, 서론에서 생명의학 연구에 관한 전통적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인류학적, 도덕적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제1부에서 인간 배아의 존엄성과 태아진단과 치료행위의 도덕성, 그리고 체외 수정 등에서 얻은 배아를 대상으로 한 기술적 조작들에 대한 윤리문제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제반 인공적 출산기술의 기술적 문제를 설명한 다음 이것이 부부간, 부부의 인공 체외수정이 결혼과 인간생명 존엄성에 어떤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6) 교황청 신앙교리성성(1980). 안락사에 관한 선언문. 사목 제71호. pp.125-132. 1980.

7) 교황청 신앙교리성성(1987). 인간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사목 제112호. pp.119-144. 1987.

지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잉여 수정란 처리문제와 대리모 문제가 여기 포함되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제3부에서는 이런 인공출산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내용에 대해서 도덕률과 민법간의 상호 관련성을 다룸으로써 인공적 출산기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바, 말하자면, 이 문헌은 인공적 출산기술과 관련 배아사용 실험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의학적 행위에 대한 윤리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훈령은 질병 등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부부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함께 이들의 어려움을 대신할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을 조언하는 한편, 선의의 과학자들에게 결혼과 인간출산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불임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5) 의료인 헌장(Charter for Health Care Workers, 1995)⁸⁾

1995년, 교황청 보건 사목 평의회가 펴낸 「의료인 헌장」은 위에 열거한 주요 생명의료윤리 관련 교회 문헌들과 역대 교황들의 연설문들을 총 망라해서 하나의 지침서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활동이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봉사라는 것과 따라서 의료인은 항상 연민의 자세를 갖고 환자를 전인적으로 대함으로써 의사-환자 관계가 곧 신뢰와 양심에 기초한 인간 관계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톨릭 의료인의 의료활동은 하느님 사랑의 봉사적 도구이며 선교이기 때문에 윤리적 충실성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는 서론에 이어 출산과 생명, 그리고 죽음에 관한 내용들을 모아 크게 3장으로 이를 구성하고 있다.

제1장 출산에 관한 내용에서는 유전자 조작기술과 인공적 출산 조절방법들, 그리고 인공출산 방법들의 기술적, 원리적 문제를 가톨릭적 윤리관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제2장 생명에 관한 내용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활동을, 즉 질병 예방이나 진단, 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행위에 대해 관련 윤리문제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한편 죽음에 관한 제3장에서는 말기 환자의 치료, 특히 이들에 대한 진통제 사용이나 질병에 대한 정확한 고지(告知) 등에 관해 의료인들이 윤리적 판단을 하도록 돕고 있다.

한마디로, 이 「의료인 헌장」은 현대 가톨릭 의료인들을 위한 현대 가톨릭 윤리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6) 기타 관련 교회 문헌들

위에서 소개한 주요 생명의료 관련 문헌들 외에도 가톨릭 교회는 이 분야의 거의 모

8) 교황청 보건사목 평의회(1995). 의료인 헌장(Charter for Health Care Workers).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번역 출판, 1997.

든 실제적 행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많은 윤리적 판단과 함께 대안적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인구문제와 인구정책의 윤리성에 관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연설문,⁹⁾ 「인구개발」(Population Development)이라든지 교황청 가정위원회¹⁰⁾의 「인구추세에 관한 윤리적, 사목적 측면」(Ethical and Pastoral Dimensions of Population Trends, 1994), 뇌사(腦死)에 관한 1985년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의 「생명연장과 사망 확인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Prolonging of Life and Determining Death),¹¹⁾ 유전 검사와 상담의 윤리에 관한 1983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연설문,¹²⁾ 「유전자 조작의 윤리」(Ethics of Genetic Manipulation), 그리고 장기기증과 이식의 윤리문제에 관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연설문,¹³⁾ 「혈액과 기관기증자」(Blood and Organ Donors) 등을 비롯한 많은 문헌과 교황이 직접 유엔이나 전 세계 의료인 단체 모임들에서 행한 연설문들이 그것이다.

4. 가톨릭 보건의료 단체들의 윤리선언 및 지침

가톨릭 교회의 생명의료윤리교육 방법 가운데 중요한 다른 하나의 방편은 교회 내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윤리선언 내지 지침들이다.

기본적으로 앞서 소개한 생명의료윤리 관련 교회 문헌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이들 윤리선언이나 지침들은 가톨릭 보건의료인 당사자들이 일상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앞서 소개한 문헌보다 더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윤리선언이나 지침 가운데는 물론 전세계 가톨릭 의료인들끼리의 약속을 바탕으로 한 것도 있지만, 대개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윤리선언이나 지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는 1982년 국제 가톨릭 의사협회 모임에서 제정한 「국제 가톨릭 의사 윤리규약」과 1971년 미국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미국 내 「가톨릭 의료기관의 윤리 및 신앙지

9) Pope John Paul II(1984). Population Development. The Pope Speaks 29(3): 246-252.

10) Pontifical Council for the Family(1994). Ethical and Pastoral Dimensions of Population Trends. Series Vatican Documents, Libreria Editrice Vaticana.

11) Pontifical Academy of Science(1985). Report on Prolonging Life and Determining Death. Health Progress, p.31.

12) Pope John Paul II(1983). The Ethics of Genetic Manipulation. Origins 13(23): 385, 388-389.

13) Pope John Paul II(1985). Blood and Organ Donors. The Pope Speaks 30(1):1-2.

침», 그리고 1993년에 한국 가톨릭 병원협회가 만든 「의학윤리지침」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국제 가톨릭 의사 윤리규약 (국제 가톨릭 의사협회 총회, 1982)¹⁴⁾

이 규약은, 전세계 가톨릭 의사들이 자연법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생명의료윤리에 충실할 것을 서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선 가톨릭 신앙을 따라 살도록 부름 받았다는 확신과 소명의식, 그리고 가톨릭 의사는 환자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면도 고려하기로 한다는 약속 밑에 16가지 구체적 보건의료 활동에서의 윤리적 삶을 서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새로운 의학지식과 윤리문제들에 관한 정보습득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비롯해서 법을 어기거나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 동료의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등 일반 윤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인공유산과 안락사 시술금지,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 보급, 임종환자 치료 등 생명의료 관련 기술들에 대한 가톨릭적 윤리지침들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약은, 특히, 결론으로 비록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질병의 치료나 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가톨릭 의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가톨릭 의료기관의 윤리 및 신앙지침 (미국 주교회의, 1971)¹⁵⁾

원래 미국에서 처음 가톨릭계 병원들을 위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1949년이다. 이것이 1954년에 1차 개정된 뒤 1971년 현재와 같은 새로운 지침으로 크게 바뀐 것이다.

이때 새로 추가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항목들을 보면 역시 이 기간 중에 새롭게 문제가 된 인공유산의 문제와 자궁절제술 불임수술, 그리고 인공수정 등에 관한 것들이다.

총 32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 이 윤리 및 신앙지침은 환자들의 동의를 얻는 문제와 비양심적 진료를 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환자의 비밀을 지켜주는 일과 윤리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문제 등 의료행위의 일반적인 윤리사항 외에 임종환자에 대한 안락사 시도 금지 및 인공유산 금지, 그리고 제한적 제왕절개 수술의 시술 등 생명관련 의술들에 대한 윤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모체의 생명보호 필요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태어나 자궁전체를 제거해야

14) 국제가톨릭의사협회(1982). 가톨릭 의사윤리 규약. 한국가톨릭의사협회편 [의학윤리] pp.491-493.

15)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1971). Ethical and Religious Directives for Catholic Health Facilities. pp.1-180.

하는 상황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에 대해서도 가톨릭 의료인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학적, 영적 치료를 제시함으로써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관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적절한 진통제 사용과 불필요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고가(高價)의 첨단 의학기술 사용금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사망의 확인과 신중한 부검 결정 등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쉽게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고 있는 이 윤리 및 신앙지침은 가톨릭 의사들에게 실제적인 윤리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의학윤리지침 (한국가톨릭병원협회, 1993)¹⁶⁾

한국내 약 40개 가톨릭계 병원들의 모임인 한국가톨릭병원협회가 1993년에 채택한 의학윤리지침은 이보다 몇 년전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에서 제정해서 기관 내 의료인을 포함한 전체 직원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의학윤리지침」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 「의학윤리지침서」는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 설명에 이어, 환자진료를 포함한 총 10가지 생명의료 관련 기술들에 대한 가톨릭적 윤리지침과 해설을 곁들이고 있다.

즉, 첫째는 환자진료에 관한 지침으로, 가톨릭 병원들은 환자의 진료를 영리성 추구로 해서는 안되며, 진료분쟁을 예상한 방어적 진료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의학적으로 정립된 진료와 정확한 양의 투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되, 어떤 이유에서라도 환자를 차별하거나 과잉 또는 과소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의사는 의업의 명예를 지켜야 하며 진료는 동료 의료인들과 항상 협조하여 최선의 진료를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과 환자의 종교와 믿음을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중환자의 경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른 삶의 가치를 갖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을 다짐하고 있다.

둘째는 가족계획에 대한 윤리지침이다.

교회 의료기관에서는 자연적인 가족계획 방법 이외의 피임방법을 제공하거나 이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짐한다. 단, 인공적인 피임방법들의 원리나 부작용에 대한 상담은 해 줄 수 있으며, 남녀 생식기관의 특정질병 치료결과가 영구 불임 상태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치료를 허용한다.

교회 의료기관은 이런 건전한 가족계획 지도와 상담을 위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회 의료기관에서의 이런 가족계획 상담과 지도는 병원 내 활동뿐 아니라 지역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적극 교육 홍보하도록 하여

16) 한국가톨릭의사협회(1993). 의학윤리 지침.

야 한다.

셋째는 인공유산에 관한 윤리지침으로, 교회의료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인공유산을 시술할 수 없다는 것과 임신한 여성의 생식기관에 암과 같은 병이 발생된 경우 그 치료를 위한 자궁적출 및 이로 인한 태아사망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 그러나 자궁의 임신으로 임신부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태아 및 그 부속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이 경우에는 수술시기와 수술방식 등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넷째는 제왕절개술에 관한 윤리지침이다.

교회 의료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연분만하도록 권고하며, 모체와 태아의 생명보존과 인권을 유지하는 목적에서 난산기 제왕절개, 둔위임신, 태아긴박증 등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제왕절개술을 최대한으로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다섯째는 태아진단과 성감별에 관한 윤리지침으로, 여기서는 교회 의료기관이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검사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과정일지라도 성별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섯째는 인체실험에 관한 윤리지침이다.

즉, 인체(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 내 모든 실험은 사전에 동물실험을 거쳐 인체에 대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어야 하며, 임상시험을 포함한 모든 인체실험은 그 실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실험의 내용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과 임상시험을 포함한 모든 인체실험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병원윤리위원회 또는 관련 심의위원회의 적법 여부 판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일곱째는 죽음의 판정과 고지에 관한 윤리지침으로, 교회 의료기관에서 임종하는 환자에 대한 판정은 우리 나라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것과 환자의 사망여부를 판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각 병원의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덟째는 안락사에 관한 윤리지침이다.

교회 의료기관에서는 물리적 혹은 화학적 방법으로 직접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 소극적인 안락사도(일상적인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허용하지 아니 한다는 것과, 임종에 가까운 환자에게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명유지 수단(음식물 투입 및 일반적 간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끊으려고 시도되는 모든 조치는 비록 환자가 요청하였다 고 하여도 시행하지 않으며, 임종을 앞둔 환자는 끊임없는 친절과 정성어린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모든 진

료수단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없는 죽음이 임박하여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의 연장만을 유지하게 될 때, (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은 의료인의 양심 안에 허용되나) 환자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간호를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아홉째는 장기이식에 관한 윤리지침이다.

장기이식은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 방법이어야 하고, 따라서,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얻기 위한 시도가 내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사체로부터 장기를 제공 받을 때는 의학적으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공인된 '죽음의 정의' 판정에 의하며, 제공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처치도 사전에 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장기 제공은 강압 또는 의무감에서 행해질 수 없다는 것과 장기제공은 어떤 형태이든 매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장기 수령자의 선택에 있어 장애자, 빈부의 차이 또는 교육수준 등 사회적 조건으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장기이식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회생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열째는 체내 인공수정과 체외 수정에 관한 윤리지침이다.

즉, 교회 의료기관에서는 배우자간의 체내 인공수정 및 비배우자 간의 인공수정 기술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과 아울러 체외수정의 기술도 배우자간이나 비배우자간 어떤 경우에도 시행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교회 의료기관에서는 교회 밖 의료기관에서 체외수정 후 남은 수정란이라 할지라도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 관찰에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과 교회 의료기관에서는 전통적인 불임치료 기술을 더욱 더 연구하여 향상 발전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다.

5. 각급 가톨릭계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에서의 윤리교육

가톨릭 교회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가톨릭계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다.

1995년 교황청 보건 사목 평의회가 펴낸 「의료인 헌장」 7항에 보면,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은 의료인들에게 과거보다 좀더 철저한 전문성과 함께 연구능력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은 자신 안에 좀더 확실한 인간적, 그리스도적 가치를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도덕적 양심을 일깨워주는 '윤리적, 종교적 훈련' 을 받아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이 헌장은 “의료인들 모두는 도덕과 생명윤리를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 양성을 책임진 사람들(의학 교육자들)은 생명윤리 강좌와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 당부하고 있다.

이는 물론, 각급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등 의료인 양성기관들에서 생명의료윤리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세계 가톨릭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들에서는 가톨릭적 윤리관에 바탕을 둔 생명의료윤리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과목의 하나로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생명의료윤리연구소들을 병설하고 이에 관한 많은 연구와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의학윤리 교육에 관한 한 두 개의 가톨릭계 의과대학, 즉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과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다른 어느 의과대학들보다 충실한 의학윤리 관련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톨릭 의과대학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1980년부터 의학윤리를 정규 필수과목으로 개설해서 학점을 부여해 온 외에 별도로 4학점의 인간학(人間學) 강좌를 개설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비롯하여, 그리스도교적 인간관과 윤리관, 그리고 인간적 성숙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장차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설립된 지 10년밖에 안 된 대구효성가톨릭 의과대학의 경우도 의학과와 생명의료윤리와 사회윤리 과목 외에 의예과에 가톨릭사상과 윤리학개론 등을 개설하는 등 총 10학점 이상의 직접적인 윤리관련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윤리가 국가시험에 포함된 우리 나라 간호학 분야의 경우는 모든 대학에서 이 과목이 이수되고 있겠지만 가톨릭계 간호대학들에서는 당연히 가톨릭 교회의 주요 문헌이나 가톨릭적 윤리원리가 추가적으로 교육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 글에서는, 생명의료윤리 교육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관심과 실천배경, 그리고 실제 의학연구나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리교육을 그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즉, 첫째로 생명의료윤리 관련 교회문헌들을 통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표명과 교회안팎의 생명의료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둘째로 교회내 보건의료단체들의 윤리선언이나 규약을 통한 자율적 교육, 그리고 셋째로 각급 가톨릭계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들에서의 정규 또는 비정규적 윤리교육이 그것이다.

이들 윤리교육의 내용에서 보듯이, 가톨릭 교회의 경우 생명의료 관련 연구나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이를 널리 알리고 교육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이런 관심과 실천 노력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학이나 의료의 본질이 인간(생명)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생명에 관해 어떤 간접적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잘못된 도전일 뿐 아니라 인간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손상하는 일로 보는 것이다. 가톨릭 생명의료윤리교육에서 특히, 인간의 성과 출산에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많은 윤리적 판단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이 인간적 삶을 위한 가정과 결혼의 신성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생명에 관련된 의학적 연구나 의료의 윤리성 여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관심과 노력은 단지 이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교육하고 발전시켜 온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색인어 : 가톨릭 · 생명의료윤리교육

=ABSTRACT=

Catholic Church and Biomedical Ethics Education

MENG Kwang-ho*

The Christian tradition, rooted in both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and exemplified in the story of the Good Samaritan, has always encouraged the care for the sick.

This tradition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edical ethics in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discipline called pastoral medicine fully bloomed and the newer developments in biological and medical science encouraged the growth of medical ethics.

Catholic Church has been trying to help the Catholic health care professionals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Catholic ethical principles so that it parallels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and acumen.

This article reviews three major efforts of the church to help the health professionals for their ethical reasoning.

First, since the famous statements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in early 1960s, many church's teaching on biomedical ethics have been published as church documents and recommended to be followed by the Catholic health professionals.

Second, various Catholic health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also have published ethical codes and directives for their members and member organizations.

Third, medical and nursing ethics have been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most Catholic medical and nursing colleges.

Key Words : Catholic Church, Biomedical Ethics Education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